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8. 15.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팀 장	김 성 훈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김 정 숙		044-202-1720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이 성 경		044-202-1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면서, 관계부처와 서울시· 경기도에게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강화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가 1일 생활권**에 있어 코로나19 전파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평생친구

- 특히, 서울·경기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인천 역시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할 것을 인천시 에게 당부하였다.
- 아울러, **수도권 병상 공동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긴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방역당국에 강조하였다.
- □ 정 본부장은 다단계 방문판매가 점조직인 특성 때문에 고위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공정위와 방역 당국에게 서울·경기와 협의하여 점조직 형태 금지 및 역학 조사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 □ 지난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 * 서울특별시·경기도 국내발생 확진자(8.9.~8.15.) : 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
 -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지난 1주간 전국 확진자 중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14.3**%에 달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
 - 또한, 교회,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 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급격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관련 확진자 96명),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39명), 롯데리아 종사자모임(관련 확진자 16명),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관련 확진자 13명) 등 (8.14 18시 기준)
- □ 정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다.
- 단계별 격상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우 2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지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47.8명 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다.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우선 **8월 16일**부터 **2주간**은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 그러나 2주 후에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 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 모임·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다.





-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월 19일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 다음으로 그간 **지정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격렬한 CX류,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기존 고위험시설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4mⁱ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특별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²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여 8월 15일부터 적용 중이다.
-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 감염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2주 후, 또는 그 전이라도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평생친구

-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 행사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 하도록 한다.

< 집합·모임·행사 사례 >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이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2주 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 이나 기관 등은 이를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프로스포츠 경기와 국내 체육대회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8월 16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 □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1/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평 생 친 구

- □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 □ 마지막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 □ 2단계 격상은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2주 후 위험도를 다시 평가** 하여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평생친구

[국민 행동 지침]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 ②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 ③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
 -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평생 친구

뭍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과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격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간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하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SPEN A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 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